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1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시정, 권고 | - | - | - |

제 목 : 합숙소 총괄 운영·관리 부적정

○ 현황(개요)

□처(■부)(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¹⁾」(이하 “지침”이라 한다)등에 따라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정된 생활환경의 제공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합숙소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합숙소 “총괄 관리자”는 지침의 제·개정 등을 통한 합숙소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을 의미하며, “관리자”는 합숙소의 확보, 계약체결 및 채권관리, 입소·퇴소관리, 합숙소 현황점검 등 합숙소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의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침 제4조(합숙소운영)에 따라 합숙소는 전세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임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부동산 현황에 따라 총괄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월세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임차할 수 있으나 월세 임대차계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합숙소 면적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은 28㎡이하이어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근 부동산 현황에 따라 총괄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또는 1인 거주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침 제6조에 따르면 합숙소의 입소신청은 입소자 모집공고에 의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를 신청하는 직원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은 2019.9.10. 제정 이후 4차례 개정(4회 개정 2022.5.24.)되었으며, 본 처분요구서의 지침은 감사 개시일 이전의 종전 지침을 적용하였음.

지침 제7조의 2(입소자격제한)에 따라 본사 소재지와 일반적 출퇴근 거리 30km 이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주거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본사 및 본사 소재지의 합숙소 입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지침 제7조에 의한 순위에 따라 차순위 입소자를 선정하거나 추가 모집하여 공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한편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현장 합숙소 입소자는 관리비 및 거주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공사 예산에서 지원하되, 세대별 월 평균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분은 입소자가 부담하고, 공사는 합숙소 별 비품 임차비용 및 입주 청소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주에 필요한 제반비용’과 ‘비품’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담당부서는 본사 및 현장 합숙소가 운영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침을 개정하거나 운영방침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다.

○ 확인된 문제

1. 합숙소 운영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적용 관리 미흡

2022년 1분기 합숙소 관리대장(2022.3.31.일 기준)에 따르면 총 124호의 합숙소 중 ‘월세 임대차계약’ 55호, ‘3인기준 국민주택규모 초과’ 2호, ‘1인당 전용면적 28㎡ 초과’ 14호 등 62호(9호는 예외사항 사유 중복)가 합숙소 운영원칙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현장합숙소 23건은 합숙소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침에 의거한 총괄관리자의 동의 없이 관리자 임의로 예외규정을 적용²⁾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지침 예외사항 적용 및 총괄관리자 동의 현황

| 현장합숙소 호 수 | 지침 예외사유 해당 호 수 | | | 총괄관리자 동의 호 수 |
|-----------|----------------|-----------|------|-----------------|
| | 85㎡초과 | 28㎡/1인 초과 | 월세계약 | |
| 124 | 2 | 14 | 55 | 23 |

2) 총괄관리자 동의 없이 예외규정을 적용한 지침 위반사항은 관리자(합숙소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의 장)의 책임으로 향후 현장합숙소 운영 실태점검 등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

또한 지침에 의한 ‘동의’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장 합숙소 임차 시 □처장의 협조 결재를 통해 동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협조 결재의 경우 합숙소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외사유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공실 최소화를 위한 조치 미흡

또한 1분기 합숙소 관리대장에 따르면 ■부에서 관리하는 본사 합숙소(총31호, 97실) 중 10실의 공실이 발생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22.5.19.)까지 지침 제6조에 의한 모집 공고를 시행하거나 지침 제7조에 의한 차순위 입소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규 입소자를 선정하는 등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본사 합숙소 공실 현황

| 본사현장합숙소 전체 호(실) 수 | | 공실 현황 (22.03.31. 기준) | |
|-------------------|-----|-------------------------|-----|
| 호 | 실 | 공가 | 공실 |
| 31호 | 97실 | - | 10실 |

3. 입소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지침 보완 요구

담당부서는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안) 보고(■부-107호, 2022.1.14)”를 통해 소위 ‘관사 재테크³⁾’를 방지하기 위해 타공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본사와 출퇴근 가능거리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거나 주거지가 있는 자는 본사 소재지의 합숙소 입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타공사 사례⁴⁾와 달리 지침 상 입소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주거시설 소유 여부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가 포함되지 않아 관리자가 입소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식 등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인정된다.

3) 소속기관에서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주택구입(임차) 금액으로 신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는 공직자의 행태를 의미함

4) □□공사의 경우 합숙소 입소신청 시 입주자격 사실관계확인서(입소자 확인 서명) 및 지방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현장 합숙소 거주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 미비

현장 합숙소는 본사 합숙소와 달리 지침 제10조에 따라 관리비(평균관리비 한도)와 거주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사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주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숙소 지원 기준 알림(■팀-5899호, 2010.12.24.)” 문서([표3] 참조)를 근거로 각종 소비재(침구, 식기, 청소도구 등) 구입비용 및 통신비(TV 및 인터넷)를 공사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합숙소 지원 기준 알림(■팀-5899호, 2010.12.24.)” 내용 요약

| 구분 | 합숙소 지원 기준 | | |
|----------------|----------------------------------------------------------------------|--------------------------------------------------------------------------------------------------------------------------------------------|--|
| 1. 합숙소 운영부서 지원 | 내구재 | TV(신규 도입분부터 고화질 디지털 TV 설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전자렌지, 청소기, 식탁, 의자, 밥통, 책상, 의자, 소파 ⇒ 임차하여 사용, 임차기간 종료 후 임대업체 소유권 포기 물품은 부외 자산으로 등록 후 관리 | |
| | 소비재 | 이불, 식기류, 청소도구, 교자상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공용물품 ⇒ 합숙소 운영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구입하여 사용 | |
| | 관리비 | 수선유지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 공동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 |
| | 기타 | 전화/케이블방송/인터넷 설치 및 사용료 | |
| 2. 직원 부담 | ○ 합숙소 관리비 중 세대전기료 및 난방비, 수도료, 도시가스비 ○ 비누, 치약, 세수수건 등 개인생활과 관련한 비용 | | |

그러나 2010년에 방침 수립한 ‘합숙소 지원 기준’은 14개에 불과한 합숙소를 운영하던 시기에 검토된 내용으로서 1인 거주형태가 증가한 현재의 운영환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사와 현장 합숙소의 구분이 없고 개인사용 관리비는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지침과도 상충되는 내용으로, 11년이 경과한 현재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2019년 9월에 지침 제정 이후 2010년부터 적용해 온 합숙소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품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했으나, 2022년 현재까지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각 현장 합숙소 관리자가 비품 및 비용 지원에 대해 임의 판단함으로서 합숙소별 지원규모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공사 예산으로 지원하는 통신비(TV 및 인터넷) 및 소비재(침구류 등) 구입비용의 경우 [표4]와 같이 입소자별 지원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현장합숙소 통신비 및 소비재 지원금액 현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비교(단위: 원) | | |
|--------------------|-----------------------------------------------|----------------|---------|---------|
| | | 최소 | 최대 | 평균 |
| 월 통신비 (TV,인터넷) | 현장합숙소 124호 중 79호(64%) 지원 중 ※ 45호(36%)는 미사용 | 8,800 | 72,600 | 37,490 |
| 소비재 구입비 (침구류 등) | 입소자 149명 중 56명(38%) 지원 (‘20.1월~’22.4월 중) | 42,380 | 628,000 | 216,680 |

* 현장근무직원은 합숙소 통신비와 별도로 개인휴대폰 통신비(3만원/월)를 지원받고 있음

5. 총괄관리자 및 관리자의 책임 및 관리기능 강화 요구

2022년 4월 기준으로 본사 합숙소 31개소에 대한 관리자는 ■부장이며, 현장 합숙소 124개소는 각 부의 부장 35인이 관리자로 되어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총괄관리자는 예외사유에 대한 동의와 분기별로 관리자로부터 합숙소 관리대장을 보고받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면 합숙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합숙소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총괄관리자는 36명의 관리자들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합숙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또는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이 제출한 분기별 관리대장을 통해 지침 미준수 등 부적정한 운영실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않는 등 총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관련자 의견

담당부서는 3기신도시 등 공사의 사업참여 확대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합숙소 수가 급증(‘19년말 50개소, ’22년 3월 155개소)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지침에 따른 운영방식으로는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3월부터 합숙소 설치 및 운영 실태를 방문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자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업 이전(‘23년 말 광교 이전 예정)에 대비하여 본사 합숙소 운영규모의 단계별 축소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상반기 신입

직원 채용 시 본사 합숙소 신규임차 최소화를 위해 3월부터 신규 입소자 모집을 일시 중지 하는 등 공실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숙소 임차 시 예외사유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절차 마련, 입소 제한대상의 구체적인 확인방안 마련, 통신비 등을 포함한 공사 지원기준 마련, 관리책임 강화방안 검토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 세부운영기준 수립 등 “시정” 요구

- 합숙소 입소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 등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에 방침 수립한 ‘합숙소 지원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합숙소 비품 및 거주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지원 범위(종류, 수량, 세부규격, 지원방법, 금액한도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합숙소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관리자는 연1회 이상 실 거주현황, 시설물 및 비품현황 등을 점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 합숙소 총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MIS시스템 활용 “권고” 요구

- 임차주택 및 입소자 현황, 비품내역, 공실현황 등 합숙소 관리대장의 정보 및 전자결재(예외사유 적용, 분기별 관리대장 제출, 점검결과 제출 등)를 차세대MIS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원(●부) 협조].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 | | | |
|-------------|------|--------|--------|--------|--------|
| No 2022 - 2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시정 | - | - | - |

제 목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현황(개요)

□처(■부)는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표1]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현황(2022.4월 기준)

| 합계 | 세부전문분야 | | | | |
|-----|----------|----|----|----|----|
| | 법률(노조추천) | 행정 | 경영 | 인권 | 보안 |
| 15인 | 8인(4인) | 4인 | 1인 | 1인 | 1인 |

○ 관련법령(판단기준)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1/2이상 외부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칙 제46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 1/2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세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외부 위원 1/2이상 의결에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위촉된 외부위원을 배제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확인된 문제

□처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0.7.1.부터 2021. 6. 30까지 1년간 총 36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의결에 참석한 외부위원 수가 1/2 이상인 경우는 4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2회는 1/2 미만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인사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외부 위원 중 가장 많이 참석한 위원이 16회인 반면 2명의 위원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특정위원이 편중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련자 의견

■부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 중 1/2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칙 제48조 제4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의결 과정에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이 충족된 이후 불필요한 서면의결을 생략하면서 불가피하게 외부위원의 수가 1/2 미만으로 의결된 결과이므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에는 객관적인 인사관리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인사위원회 의결 시 외부위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외부위원이 1/2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외부위원별 참석빈도를 고려하여 특정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따른 “시정” 요구

- 관련부서에서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구성 시 특정 외부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의 수가 1/2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3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권고 | - | - | - |

제 목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전보 등 인사관리 부적정

○ 현황(개요)

□처(■부)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전보 등 인사발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직종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경력관리, 직무부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P.25)」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전보 및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 공사는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정년 3년(2급 이상) 또는 4년(3급 이하) 전에 도달한 자를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으로 운영하며, 전문직(전문위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2022.1.1.일자로 13명이 대상자로 추가되어 현재 총 30명이 전문위원으로 직종 전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누적인원 4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인 ■부는 증가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보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등의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다.

○ 확인된 문제

■부는 “2022년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발령(안) 보고(■부-346호, 2022.1.27.)”를 통해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전문위원 인사운영방안 검토보고(■부-681호, 2021.12.28)”에 근거하여 희망근무지(정년 2~1년 전) 및 희망직무(정년 4~3년 전) 등을 토대로 전문위원 30명(부서장 보직자 3명 포함)에 대한 인사발령(2022.2.9.일자)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기인사 다음 달인 3월에 “임금피크제 대상자 관리방안 및 관련규정 개정(안) 검토보고(■부-658호, 2022.3.18)”를 통해 관련규정상 직무분야가 전문위원 희망직무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사유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직무명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위원을 부서별 재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문위원 인사운영 개선에 따른 인사발령(안) 검토보고(■부-756호, 2022.3.31)”를 통해 전문위원 12명에 대한 인사발령(2022.4.4일자)을 시행하여 다수의 전문위원을 현장 사업부서 위주로 재배치하였다.

그 결과 예측가능한 인사시행 및 체계적인 전문위원 인사관리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전보 등 중요한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처(■부)는 2022년 정기 전보인사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전문위원의 경험과 능력 활용이 요구되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였고, 전보는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경영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였으며, 예측가능한 인사 시행을 위해 하반기 중 신규 전문위원 전환 인원수, 희망직무, 부서별 수요조사, 경력관리 등을 종합 고려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인사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은 정기인사 이전부터 기 시행중이었고, 이미 1년 전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었으므로 2022.2.9.일 정기 인사발령 시 반영하여야 했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방안 수립 및 공개 “권고” 요구

- 관련부서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경력관리 및 활용이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부여 및 부서배치 기준을 재정립하여, 향후 전문위원 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4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시정 | 환수 | 6,577 | 주의(1) |

제 목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 현황(개요)

□처(■부)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세칙 제4조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공사에 소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중인 직원이나 국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칙 제6조에 따라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은 기본복지점수¹⁾와 변동복지점수²⁾로 구분하고, 전년도 12월 31일일자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칙 제7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는 매년도 복지점수 확정일을 기준으로 휴직, 국외파견,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등 적용 배제대상을 ■부에 조회한 후에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

2)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

○ 확인된 문제

2020년 이후 복지점수 부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년도에는 해외장기교육 파견자 2명, 배우자동반휴직 1명, 자기개발휴직 1명 등 총 4명을 제외하였고, 2021년도는 가족돌봄휴직 2명을 제외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는 2021년 1개월을 초과한 가족돌봄휴직자 1명에 대하여 복지점수 1개월분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 복지점수 확정일인 2021.12.31.일 기준 배제대상인 휴직자(질병·육아휴직 제외) 및 국외장기교육파견자를 조회하지 않고 “2022년 선택적복지제도 기본 복지점수 부여계획 보고”(■부-2호, ‘22.1.3.)에 의해 기본점수를 부여하였다.

[표1] 기본복지점수 과오지급 및 미정산 현황(2022.1.3.일 기준)

| 해당년도 | 배제사유 | 휴직/파견 기간 | 인원 | 과오지급액(원) | 비고 |
|-------|----------|-----------------------------|----|-----------------------------|-------------------------|
| 2021년 | 가족돌봄휴직자 | 2021.11.29. ~2022.2.25. | 1명 | 177,000(미정산) | 휴직기간 월할 계산 정산액 |
| 2022년 | 국외장기교육파견 | 2021.12.06. ~2022.12.31. | 4명 | 6,400,000 (1,600,000×4인) | |
| | 배우자동반휴직 | 2021.12.08. ~2022.12.31. | 1명 | 1,600,000 | 과오지급점수 정정(2022.1.4.) |

그 결과 2022년 기본복지점수 부여 시 배제대상인 장기교육파견자 4명, 배우자 동반 휴직자 1명 등 총 5명에게 8백만원(1인당 1,600천원)을 과오지급 하였고, “22년 1월 신규입사자 선택적 복지점수 부여 및 기부여 점수 정정보고(■부-17호, ’22.1.4)”를 통해 과오지급된 배우자 동반 휴직 직원 1명에 대한 기본복지점수를 정정(1,600천원 차감)하였으나, 장기교육 파견자 4명에 대해서는 5개월이 지난 감사기간 현재(2022.5.20.)까지 이를 정정하고 환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관련자 의견

■부는 2022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 전년도(2021년) 사례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국외 장기교육 파견자가 없었던 예외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기준으로 가족돌봄휴직자 1명만을 제외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감사 지적내용에 따라 2021년 11월 29일자 가족돌봄휴직자 1명에 대한 미정산액(177,000원)을 환수하고, 2022년 과오 지급된 직원 4명에 대한 복지점수를 차감(회수)하는 등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복지점수 확정일에 배제대상을 조회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선택적 복지점수 부여 시 배제대상 확인절차 이행 “시정” 요구

- 관련부서에서는 선택적 복지점수 부여 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한 배제대상을 조회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등 업무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2. 재정상 조치

☞ 선택적 복지점수 미정산액 및 과오지급액 “환수” 요구

- 관련부서에서는 2021년 11월 29일자 가족돌봄휴직자 1명에 대한 연간 월할 복지 포인트 1개월분의 미정산액 177,000원을 환수하고, 과오지급으로 국외파견직원 4명에게 부여된 복지점수 6,400,000원을 차감(기 사용액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3. 신분상 조치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부적정에 따른 관련자 “주의” 처분 요구

- □처는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 公社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사유)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2022 - 5 |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소관부서 | 조치방법 | | | 금액(천원) | | |
| □처 | 2022 | 권고 | - | - | - | - |

제 목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사항 안내 규정화

○ 현황 및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는 비위면직자 등(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16. 9. 30.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공공기관 협조사항(▶과-2778호, 2016.10.17.)”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現 ◇실)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부-2213, 2016.10.24.)”를 통해 ☆처(現 □처)에 징계사유서 등 서류에 취업제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안내하고 수령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 확인된 문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과-670, 2022.03.04.)”을 통해 ‘16.7.~’21.6.(5년) 동안 발생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통보(안내)

여부 및 통보방식, 통보일을 우리 공사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부(現 □부)는 2018년에 비위면직자에 대한 파면 처분 1건¹⁾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실은 2018년 파면 대상자에 대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통보(안내) 여부 및 통보방식, 통보일을 □처에 요청(◆부-590, 2022.03.10.)하였으나 취업제한 안내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제한규정 위반 시 당사자가 형사 처벌될 수도 있음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제한제도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방지권익위원회 제82조 제6항 신설('22.1.4.)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관련 사항 안내를 의무화 하였다.(시행일 : '22.7.5.)

※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법률(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 특별히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한 취지의 중요성을 감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사항 안내” 관련 내용을 내부규정(인사규정 등)에 명시하여 업무 인수인계 누락, 담당자 안내의무 미인지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안내 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사항 안내’ 관련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권고” 요구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을 내부규정(인사규정 등)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끝.

1) A는 ◉단 ◉부(舊 ◉팀) 총괄담당자로, 위 택지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17.9.7에 관급공사 브로커 B의 승용차 안에서 ■■기업이 생산한 디자인펜스 등 제품을 그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로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어 '18.10.15 파면됨

감사결과처분요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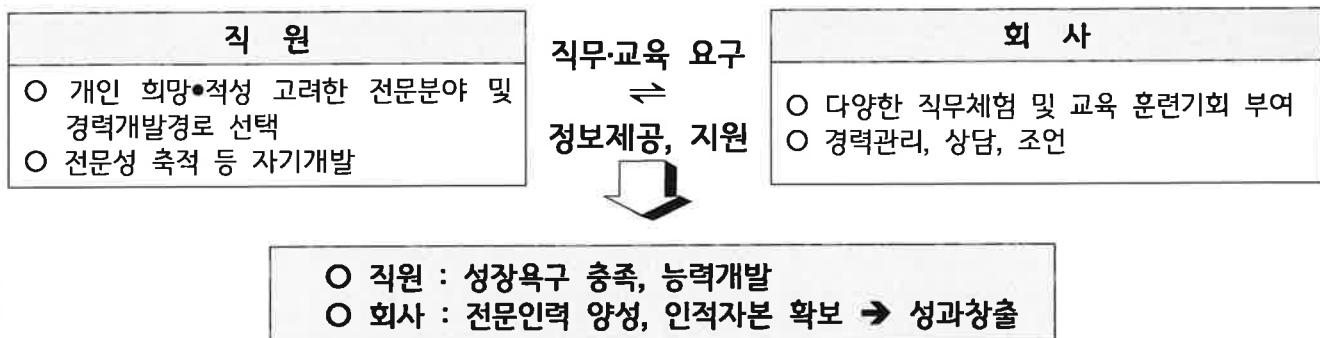
| No. 2022 - 6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 원처 | 2022 | 시정, 권고 | - | - | - |

제 목 : 경력개발제도 운영·관리 부적정

○ 현황(개요)

공사는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운영 및 시행하고 있다. 경력개발제도(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는 직원의 희망과 전공·특기·적성 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운영하여 직원에게 경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회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그림1] 경력개발제도 기본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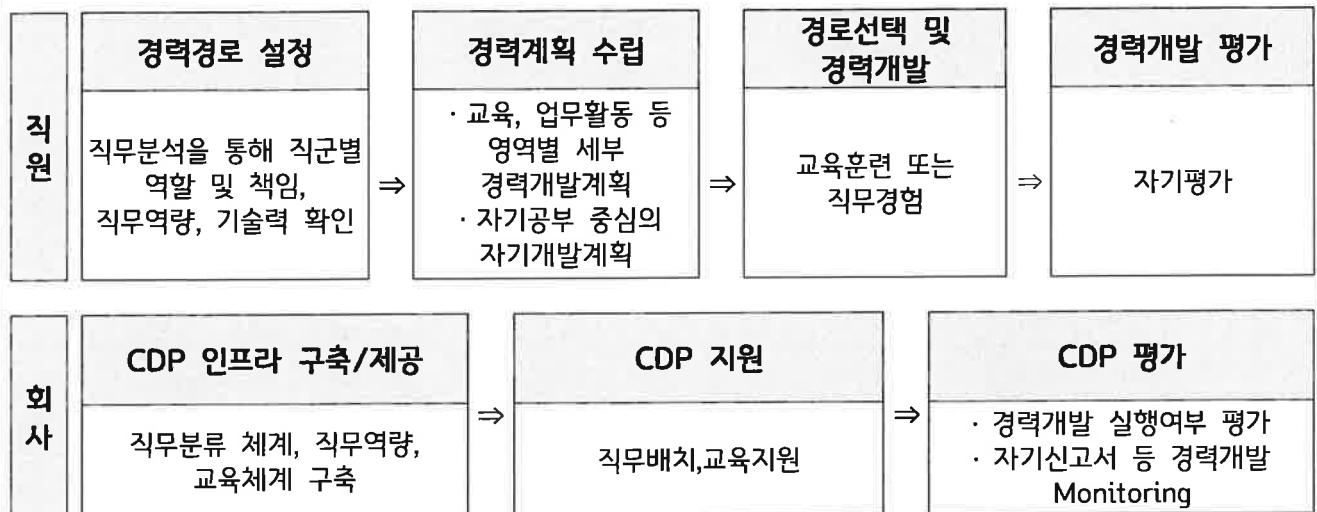
○ 관련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보직관리-경력개발제도 도입·운영에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公社는 2005년 7월 직원개인의 희망과 전공을 분석하여 장래경력 경로를 설정하고, 분야별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경력개발제도 도입¹⁾하여 현재 10개 분야, 35개 직무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다.

1) 경력개발제도(CDP) 도입·시행보고(□처 □팀-677호, 2005.7.21.)

[그림2] 경력개발제도 운영체계



경력개발제도 운영은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부가 ‘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시행’, □부는 ‘직무분석·직무평가 및 장단기 인력관리종합계획 수립, 보직 및 경력관리’도록 규정 되어 있다.

[표2] 「직제규정시행세칙」 부서별업무분장표

| 부서 | | 사무명 |
|-----|-----|--------------------------------------------------------------------------------------------------------------------------------------------------------------------------------------------------------------------------------------------------------------------------------------------------------------------------------------------------------------------------------------------------------------------------|
| ○ 원 | ◎ 부 | 1. 교육 및 훈련 총괄 가. 중장기 교육운영체계 수립 및 추진 나. 교육훈련종합계획 운영 및 관리 다. 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시행 라. 교육기획, 교육평가 및 교육이수실적 관리 마. 교육훈련체계 개선 바. 전문위원 교육 활용 및 관리 |
| □ 처 | ■ 부 | 1. 인사관리 및 운영 총괄 가. 직무분석·직무평가 및 장단기 인력관리종합계획 수립 나. 임직원 승진, 승급, 평가, 전환배치, 휴직, 보직 및 경력관리, 임금피크제, 퇴직 등 인사관리 및 인사발령 다. 표창·상장 등 포상 및 상벌·징계 관련 업무 라. 인사위원회 운영 마. 직원의 신원보증, 각종 인사관련 제증명서 발급, 임직원 자격현황 관리 바. 직원의 휴가, 시간외근무, 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총괄 사.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 등 임직원의 인사고충 업무 2. 인권경영 업무 총괄 가. 인권경영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행, 구제제도 마련 등 3. 양성 평등, 가족친화 인증업무 등 대외인증 및 평가 업무 4. 인사제도 기획 및 제도개선 (채용분야 제외) |

○ 확인된 문제

경력개발제도가 직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경력경로를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는 종합적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으로 보직배치와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직제규정의 ‘경력개발제도를 운영 및 시행’은 ☆처 ★부(2019년 이전)에서 □처 ■부(2020년), ○원 ◉부(2021년 이후)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

경력개발제가 2018년 이후 운영되지 않았으나 2021년에 직제규정상 운영부서인 ○원 ◉부가 아닌 □처 ■부에서 2020~2021년 신입사원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제도와 변경된 직무분야에 대한 안내나 설명없이 공문시행만으로 자기개발계획서(희망직무선택 및 교육지원 요청)만 작성을 요청하고 ○원에 교육지원을 협조하여 운영²⁾하였다.

[그림3] 자기개발계획서 샘플

자기개발계획서

I. 기본정보

| | | | | | | | |
|-----|-------|----|-------|------|------|-----|------|
| 성명 | ■■■■■ | 소속 | ■■■■■ | 입사년도 | 2019 | 현직무 | 주택건설 |
| 자격증 | 건축기사 | | | | | | |

II. 경력계획

| 과거 경험 직무 | | | 현재 직무 | | | 차기 희망 직무 | | | 최종경력목표 | | |
|----------|------|----|-------|----|------|----------|------|----|--------|----|-----|
| 년도 | 2019 | 년도 | 2020 | 년도 | 2021 | 년도 | 2024 | 년도 | 2035 | 유형 | 관리자 |
| 직무 | 주택건설 | 직무 | 주택건설 | 직무 | 주택건설 | 직무 | 주택계획 | 직무 | 관리자 | | |

III. 개발계획

| 개발 우선순위 | 개발 분야 | | | 역량개발계획 | | | 기술 및 지식 개발계획 | | |
|---------|-------|---------|---------|---------|--------------|---------|--------------|--------------|-----------|
| | 직무 | 현재등급 | 목표등급 | 주요 개발방법 | 개발 완료시기 (년도) | 지원 요구사항 | 주요 개발방법 | 개발 완료시기 (년도) | 지원 요구사항 |
| 1순위 | 주택건설 | E/S/J/A | E/S/J/A | 직무/교육 | 2025 | 직무배치/교육 | 기술사 취득 | 2025 | 기술사 수강 지원 |
| 2순위 | 주택계획 | E/S/J/A | E/S/J/A | 직무/교육 | 2030 | 직무배치/교육 | 관련 교육 수강 | 2030 | 교육 수강 지원 |
| 3순위 | 주택설계 | E/S/J/A | E/S/J/A | 직무/교육 | 2035 | 직무배치/교육 | 석사 학위취득 | 2035 | 대학원 수강 지원 |

2) '21년도 경력개발제도 운영계획보고(□처 ■부-2579호, 2021.9.9.)

직원 개개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희망직무와 경영여건 변화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가 변함으로 직무분류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고,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현재 직무가 변경되고 있으나 자기개발계획서의 현재직무 및 희망직무에는 반영되지 않아 인사관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 희망직무를 별도 조사³⁾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개발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직원의 전공·특기·적성 및 희망직무 등을 고려한 인사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1] 경력개발제도 직무분류 변화과정

| 구 분 | 분 야 | 직 무 | 비 고 |
|----------|-----|-----|----------------------|
| 2005년 7월 | 7 | 60 | 전문분야 직군별 분류 |
| 2006년 6월 | 6 | 45 | 총무, 경영혁신, 감사 공통분야 분류 |
| 2009년 9월 | 12 | 30 | 공통직무 확대 |
| 2017년 8월 | 10 | 30 | |
| 2021년 9월 | 10 | 35 | ‘21년 인사규정 직무분류표 반영 |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경력개발제도 관련 직제규정과 실제 운영부서 명확화 요구(시정)

【관련부서】 : ♠처(♠부), □처(■부), ○원(●부)

☞ 경력개발제도 운영 보완 요구(권고)

- 경력개발제도를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체계적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원(●부)

3) 2022년 정기 전보인사 관련 희망직무 조사 실시 안내(□처 ■부-106호, 2022.1.11.)

감사결과분요구서

| No 2022 - 7 |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소관부서 | 조치방법 | | | 금액(천원) | | |
| ♡처 | 2022 | 권고 | - | - | - | - |

제 목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절차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현황(개요)

♡처 ♥부에서는 공사의 계약업무를 총괄 처리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020년 29건, 2021년 23건, 2022년 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¹⁾으로 체결하였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계약담당자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公社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7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장~~이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고,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부서장이 실시한다. 다만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으로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기술 능력평가부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규정되어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公社「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칙 규정」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²⁾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며, 일정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예비명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입찰참가자가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동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추첨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확인된 문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계약’은 관련법령, 평가절차, 평가부서 등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표1] 협상에 의한 계약과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계약 비교

| 구분 | 협상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계약 |
|-----------|-----------------------------------------------------------------------------------------------------------------------------------------|----------------------------------------------------------------------------------------------------------------------------------------------|
| 법령 및 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지식기반사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평가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부 |
| 평가위원회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 7인 이상 참석 시 개최³⁾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평가 미참여) : 평가부서장 · 7~10인으로 구성(내부위원 50%내외) · 평가위원 정수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 |
| 평가위원 예비명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3배수 이상 · 미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예비명단(내부228명, 외부350명) · 홈페이지 공개 |
| 평가위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 추첨(다빈도순→고령자순) · 다른 사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선정 후 미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부서에서 추첨(입찰참가자 입회) · 선정 후 공개 |

2)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칙(050203)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1항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② 공공기관·준정부기관·다른 지방공기업의 4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⑤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 ⑥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도 ○과-30156호, 2021.09.1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최소 7인 이상이 참석하여 평가실시(2/3이상 출석으로 개최 불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함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직원의 경험이나 관행에 따라 실시되며, 평가를 위한 세부 매뉴얼이 없어 ‘건설기술용역 제안서평가 운영 업무 매뉴얼(▶부 내부 매뉴얼)’ 및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시)⁴⁾’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매뉴얼이나 타 지자체의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의 사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평가위원 추첨 및 섭외방법, 평가위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입찰 참가자 확인서 작성 등이 평가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향후 선정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권고” 요구

-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절차 및 관련양식이 부서별로 상이함으로, 평가절차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4)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수 제한(1/3 이내), 예비위원(불참자를 대비하여 2명 선정)까지 불참 시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2/3 출석에도 위원회 개최 가능.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8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 | - | - | 주의(3) |

제 목 : 수의계약 시행품의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 현황(개요)

△처 ▲부(現 ▲처 △부)는 「용지업무규정」에 따라 2020.8.7부터 2021.10.22.까지 △ 및 △택지 공급가격 산정을 위해 「△택지 △(ㄹ, □) 감정평가용역」 외 4건을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받아 시행하였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사무관리규정」 제16조(결재) ②항에 따르면 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규정」 제5조(전결사항) 제1항 위임전결사항 ①공통부문[표1]에 따르면 국내외 계약시행 품의는 소액수의계약¹⁾(공사, 용역, 물품 포함) 대상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위임전결사항 - ①공통부문

| 부문 | 사무내용 | 결재권자 | | | |
|----|---------------------------------------------|------|------|-----|----|
| | | 부장 | 실·처장 | 본부장 | 사장 |
| 공통 | 28. 국내외 계약시행 품의 다. 소액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 포함) | | ○ | | |
| | 라. 소액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 포함) 대상이 아닌 수의계약 | | | ○ | |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계약을 말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또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6조(시행방침) ①항에 따라 발주부서장은 용역을 계약부서장에게 의뢰하기 전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에게 시행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는 수의계약 대상 용역 발주 시 본부장 결재를 받은 시행방침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하여야 했다.

○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부는 「주택지 △(ㄹ, 모) 감정평가용역」 외 4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실·처장 전결사항인 소액수의계약 조건(추정가격 2천이하, 예외 5천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용역임에도 [표2]과 같이 본부장이 아닌 처장에게 수의계약 시행방침을 받아 발주의뢰 하는 등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

[표2] 수의계약 시행품의 결재 현황

(단위 : 천원)

| No. | 계약명 | 방침일 | 추정가격 | 계약일 | 결재현황 | |
|-----|------------------------|-----------|--------|-----------|------|---------|
| | | | | | 전결현황 | 위임전결 규정 |
| 1 | 주택지 △(ㄹ, 모) 감정평가용역 | '20.8.7. | 24,750 | '20.8.24. | 처장 | 본부장 |
| 2 | ㄱ 공동주택용지 브블록 감정평가용역(1) | '20.9.16. | 73,150 | '20.10.7. | 처장 | 본부장 |
| 3 | ㄱ 공동주택용지 브블록 감정평가용역(2) | '20.9.16. | 73,150 | '20.10.7. | 처장 | 본부장 |
| 4 | ㄱ 단독주택용지 등 감정평가용역 | '21.8.9. | 60,456 | '21.8.18. | 처장 | 본부장 |
| 5 | 주택지 공동주택용지 브블록 감정평가용역 | '21.9.28. | 73,040 | '21.10.6. | 처장 | 본부장 |

○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소속부서 관련자는 감정평가법인은 사규인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정되며, 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부 공고)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본부장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리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용역 수의계약 의뢰 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위임전결규정」 제5조를 준수하여 계약사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임의로 본부장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관련자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1. 신분상 조치

☞ 위임전결 규정을 미준수한 관련자 3명에 대하여 “주의” 처분 요구

- □처는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 公社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 사유)에 따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9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권고 | - | - | - |

제 목 : 감정평가용역 변경계약 시행방침 작성 소홀

○ 현황(개요)

△처 ▲부(現 ▲처 △부)는 「용지업무규정」에 따라 2020.9.7부터 2022.1.25.까지 택지(ㄴ, ㅇ, ㄱ신도시, ㅈ도시개발사업 등)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ㅈ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 용지(ㅊ) 감정평가용역」 외 8건에 대한 발주 및 용역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2조(변경시행방침) ①항에 따르면 발주부서장은 용역에 대한 변경계약을 계약부서장에게 의뢰하기 전에 1. 변경사유 및 내용, 2. 변경계약근거(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등), 3. 예산현황에 대한 검토근거가 포함된 시행방침을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처 △부는 용역 변경계약 시행 시 변경사유 및 내용, 변경계약근거 및 예산현황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변경시행방침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했어야 했다.

○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처 △부는 「ㅈ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ㅊ) 감정평가용역」 외 8건의 용역 변경계약을 계약부서에 의뢰하면서 [표1]과 같이 변경사유·내용, 변경근거 및 예산현황 등 변경계약 검토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누락된 감정평가 '결과보고' 형식의 문서를 첨부하여 변경계약 의뢰하는 등 규정과 다르게 변경계약 시행방침 문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변경계약 시행방침문서 작성 소홀 사례

생략

| | |
|-------------------------|-------------------------|
| 변경사유·내용, 변경근거, 예산현황 미작성 | 변경사유·내용, 변경근거, 예산현황 미작성 |
|-------------------------|-------------------------|

[표1] 설계변경 시행방침문서 작성 현황

(단위 : 천원)

| No | 계약명 | 당초 | 변경 | 증액 (비율) | 변경 계약일 | 변경시행방침 | |
|----|-------------------------------|--------|--------|--------------------|------------|--------|----------------------------|
| | | | | | | 보고형식 | 미검토 항목 |
| 1 | 스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ㅈ) 감정평가용역 | 9,680 | 11,264 | 1,584 (16.4%) | '20.11.24. | 결과보고 | -변경사유·내용 -변경근거 -예산현황 |
| 2 | ㄱ 공동주택용지 브블록 감정평가 용역(1) | 73,150 | 74,159 | 1,009 (1.4%) | '20.11.09.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3 | ㄱ 공동주택용지 브블록 감정평가 용역(2) | 73,150 | 74,741 | 1,591 (2.2%) | '20.11.12.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4 | ㅇ지구 자동차정류장(ㅌ) 감정평 가용역 | 11,660 | 28,271 | 16,611 (142.5%) | '20.10.06. | 결과보고 | -변경사유·내용 -변경근거 -예산현황 |
| 5 | ㄴ택지 ㄷ(ㄹ,ㅁ) 감정평가용역 | 24,750 | 25,298 | 548 (2.2%) | '20.9.11.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6 | ㄴ택지 도시지원용지 감정평가용역 | 10,615 | 19,031 | 8,416 (79.3%) | '22.1.25.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7 | ㅈ 준주거용지 감정평가용역 | 8,910 | 10,326 | 1,416 (15.9%) | '22.1.14.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8 | ㄴ택지 균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 장 감정평가용역 | 11,330 | 13,019 | 1,689 (14.9%) | '21.5.16.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9 | ㄴ택지 ㅋ 감정평가용역 | 11,440 | 17,254 | 5,814 (50.8%) | '21.2.25. | 결과보고 | -예산현황 |

○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no1) ‘지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大) 감정평가용역’ 변경계약 관련하여, 소속부서 관련자는 감정평가 기간만 변경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내부 보고를 완료하고, 용역 변경계약 의뢰시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기간뿐만 아니라 용역비도 증가(1,584,000원)하였고, 계약부서에 변경계약 의뢰 시 첨부된 “지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大) 감정평가 결과 보고(△부-2474호, 2020.11.17.)” 문서에는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예산현황이 누락되어 있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2조(변경시행방침)를 준수하여 변경계약 사무처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 (no4) ‘○지구 자동차정류장(ㅌ) 감정평가용역’ 변경계약 관련하여, 소속부서 관련자는 감정평가금액이 발주 시 예정가격과 차이가 나는 단순 계약금액 변경 건으로 감정평가 결과보고로 대체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의 계약금액이 16,661,100원(증액비율 142.5%)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단순 계약금액 변경 건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직원이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2조(변경시행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바 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공통) 감정평가수수료는 예상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약체결 후 감정평가 결과 확정된 수수료로 변경계약체결 및 정산하며,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므로 별도 변경계약보고 없이 감정평가 결과보고서에 수수료 증감내역을 포함하여 보고 후 변경계약을 의뢰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수수료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하더라도 공사 직원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따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용역 수의계약 의뢰 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위임전결규정」 제5조를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관련자가 제시한 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변경계약 시행방침 문서작성 소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처분

- 향후 감정평가용역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의뢰 시 「계약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한 주요 검토내용 누락 등 변경시행방침 문서작성 소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 처분합니다.

【관련부서】 : ▲처(△부).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 | | | |
|-------------|------|--------|--------|--------|----------------|
| № 2022 - 10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 |
| △단 | 2022 | - | - | - | 훈계(1) 주의(1) |

제 목 : 그� 보수공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현황(개요)

경기도 도립체육시설인 ▲는 1999년 화성시 표면 허 3만여평 부지에 준공 이래 6개의 냉지(끄, 띠, 뼈, 췌, 쪽, 그스)과 부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다.

2021.2.24.에 경기도와 GH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의해 2021.3.1.부터 2025.12.31.까지 ▲의 관리·운영을 GH가 수탁해오고 있으며, ▲는 현재 4팀 24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위·수탁체결 이후 2021년 진행된 보수공사 중 그스의 지붕 보수공사((주)◇◇건설, 계약금 20,700천원, 2021.7.26.~2021.8.23.)와 외벽균열 보수공사((주)◇◇건설, 계약금 20,270천원, 2021.11.22.~2021.12.20.)를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거.시설물유지관리업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일 경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확인된 문제

▲는 ㄱㅅ의 지붕 보수공사와 외벽균열 보수공사(이하 “전문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유지보수공사 1건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표1]과 같이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2건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업체인 (주)◇◇건설¹⁾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1] ㄱㅅ 보수공사 계약체결현황

| 공사명 | 계약방법 | 계약일 | 계약금액 (천원) | 공사기간 | 주요공종/규모 | 계약상대자 |
|----------------------|----------------|------------|--------------|---------------------------|---------------------------|---------|
| ▲ ㄱㅅ 지붕 보수공사 | 수의계약 (1인견적) | '21.7.26. | 20,270 | '21.7.26. ~'21.8.23. | 시설물유지관리업/ 지붕 보수 140㎡ | (주)◇◇건설 |
| ▲ ㄱㅅ 외벽균열 보수공사 | 수의계약 (1인견적) | '21.11.22. | 20,270 | '21.11.22. ~'21.12.20. | 시설물유지관리업/ 외벽균열 보수 200㎡ | (주)◇◇건설 |

자료 : △단 제출자료 재구성

○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소관부서인 ▲에서는 ㄱㅅ 지붕 보수공사는 물도이²⁾가 완전히 부식되어 물이 지붕 아래로 흘러 방수가 안되고 배수로가 막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급하게 보수를 진행하였으며, ㄱㅅ 외벽균열보수공사는 2021년 상반기 건축물 자체 정기안전점검 결과(2021년 6월말)에 따라 2021년 하반기건축물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전 2021년 상반기안전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2021년 수의계약실적 3건, 2022년 수의계약실적 2건인 업체로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단이 제출한 공사진행현황 내역에서 ▲관련 공사 총 11건 중 45.5%인 5건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임.

2) 지붕 물받이로 함석과 같은 재료로 처마에 달아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 흘러내리게 하는 자재임.

그러나 이미 2021년 6월말부터 외벽균열보수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 그 시 지붕보수(공사) 시행계획 보고(▲-353호, 2021.7.14.)”가 이루어져 그 시 외벽균열에 대한 문제점을 그 시 지붕 보수공사를 계획하기 전부터 인지한 상황으로 소관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그 시 지붕 보수공사는 물도이 교체의 시설보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지붕 아래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수의 목적인 공사였고 균열보수공사는 수퍼크랙실³⁾ 특허공법을 이용한 공사이므로 두 공사의 성향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물유지 관리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모두 시공 가능한 공사이며, 2건의 공사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업체이므로 소관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1. 신분상 조치

☞ 보수공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에 따른 관련자 “훈계”, “주의” 처분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한 실무담당자인 C 사원은 「인사규정시행세칙」【별표10(제56조와 관련)】에 따라 훈계를 촉구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직상감독자인 D 팀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함이 타당하다.
- □처장은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 公社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처분 사유)에 따라 C 사원에게 “훈계”를 처분하고 D 팀장에게는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끝.

3) 수퍼크랙실이라는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으로 수퍼크랙실 제품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균열보수를 시공하는 공법이다. (주)
◇◇건설은 이 특허공법의 협약업체 중 하나임.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 - 11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단 | 2022 | 시정 | 환수 | 409,013 | - |

제 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정산 부적정

○ 현황(개요)

△단은 「▽ 및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계약¹⁾에 따라 도립체육시설인 ▲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²⁾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³⁾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1) 2021.2.24.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으로 2021.3.1.부터 2025.12.31.까지 경기도 도립체육시설 4곳(▽, ▲, ▼ 및 △)의 관리·운영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임.

2)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모든건설공사에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서에 반영할 경우 반영기준의 적정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단은 2022년 3월 ▲ 주차장 하자보수 공사⁴⁾ 준공시 [표1]와 같이 계약상 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848원에 대하여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또한 공사기간이 1달 미만으로 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반영된 산출내역서를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하게 준공시 [표1]와 같이 실제사용금액을 증빙하지 못한 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고(31,181원) 지급하여, 총 409,013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표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 미정산 내역

| 비 목 | | 금 액 |
|--------|-----------|---------|
| 경 비 | 건강보험료 | 24,418 |
| | 연금보험료 | 4,701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6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73,848 |
| | 소 계 | 305,029 |
| 일반관리비 | | 18,302 |
| 이 윤 | | 48,500 |
| 부가가치세 | | 37,183 |
| 총 합 | | 409,013 |

4) 계약상대자: ◆◆, 계약금: 10,560천원, 계약기간: 2022.3.2.~2022.3.4.

○ 관련자 의견

소관부서인 △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보험료 정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최종 대금 지급 전 해당금액을 정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최종 계약대가 지급 시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재정상 조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와 이에 따른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환수 “시정” 요구
 - △ 주차장 하자보수 공사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3,848원과 건강보험료 24,418원, 연금보험료, 4,701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62원에 이에 따른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총 409,013원에 대하여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시행시 산출내역서에 해당 수수료가 계상된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준공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단.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No 2022-12 |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소관부서 | 조치방법 | | | 금액(천원) | | |
| 수단 | 2022 | 권고 | - | - | - | - |

제 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및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 현황(개요)

♣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公社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21.08.20.)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 관련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公社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공사 “재난대응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사고조사 및 보고)에 따르면 안전책임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한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비용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확인된 문제

1. 재난 발생시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공사 「재난대응기준」에 따르면 [표1]과 같이 1·2급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조사반을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규모를 조사하여야 하며,公社 「안전관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표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한정하여 사고조사 및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公社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점검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표1] 재난대응기준에 따른 재난 피해범위 및 등급

| 구 분 | | 1급 | 2급 | 3급 |
|----------|----|------------------------------------------------------------------------------------------------------------------|----------------------------------------------------------------------------------|--------------------------------------------------------------|
| 설치기구 |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재난대책단 | 비상재난대책단(부서) | 비상재난대책단(사업소) |
| 피해 범위 | 인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2명 또는 부상자 3명 이상 10명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사고 이하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규모 재난' 등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재난대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사고 이하 |
| 사고조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팀 | - |

[표2]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비교

| 재해구분 (관련법령)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
| 피해 범위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 <p>「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p>「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 |

공사 사업장 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응기준」의 재난등급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하고 사고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팀으로 하여금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조사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보고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공사 「재난대응기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재난 발생시 사고조사반의 구성과 운영,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등 사고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 정보공개 및 안전보건 개선방안

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 확인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지만, [표3]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 등 일부 정보만公社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신고·제안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안전보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신고·제안 시스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신고·제안 시스템 활성화 방안(예시) 】

- ① 사업장 협력업체 등의 신고 및 제안을 유도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② 신고·제안자가 원활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③ 안전보건 신고·제안내용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표3]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

| 구분 | 정보공개 | 신고제안시스템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방침 · 안전보건경영 관리규정 · 안전보건경영 시행세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개선 내부제안 |
| 공개 자료 | <p><u>안전보건경영</u></p> <p>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안전보건경영으로 경기도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갑니다.</p>  <p>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경영 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 시행세칙</p> | <p><u>고객참여</u></p>  <p>고객의 소리 고객제안 도시재생대학 수강 불법전대신고 안전보건 개선 내부제안</p> |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재난대응기준 보완 “권고” 요구

- 관련부서는 公社 사업장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팀을 통해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팀 구성 · 운영방안(조사자 · 조사절차 · 보고서 작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재난대응기준에 대한 관련사항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단(♣부)

☞ 안전보건관리 정보 공개 및 안전보건 개선방안 시스템 개선 “권고” 요구

- 관련부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신고 ·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단(♣부).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2022 - 13 |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 | 신분상 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천원) | |
| ▷처 | 2022 | 권고 | - | - | - |

제 목 : 계약업무처리 소홀(협상에 의한 계약)

○ 현황(개요)

◀부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인 건설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GH공사 자체 대가기준 구축을 위한 “공사원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GH 건설공사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과 “GH 건설공사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을 시행하였다.

[표1] GH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시행 현황

| 구 분 | 내 용 | | |
|-------|-------------------------------------|-------------------------|----------------------------|
| 사업명 | 공사원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GH 건설공사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 GH 건설공사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 계약금액 | 200,000,000원(VAT포함) | 540,000,000원(VAT포함) | 54,335,920원(VAT포함) |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 ♠ | (주)♥ ♥ | (주)♣ ♣ |
| 계약기간 | ‘20.02.06. ~ ’20.08.03. | ‘20.10.16. ~ ’21.10.15. | ‘20.11.26. ~ ’21.11.25. |
| 사업내용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

○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회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사 「회계규정」 제60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하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확인된 문제

1. 제안서평가위원회 세부평가점수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표 1]과 같이 GH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3건의 용역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公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2. 선금보증보험 기간 미달

공사 「회계규정」 제60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선금 지급조건 위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부는 [표 2]와 같이 “공사원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본 용역에 대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용역중지 후 재개하였다.

따라서 ◀부는 본 용역의 재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지급시 발행한 선금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용역중지기간(60일)을 가산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선금보험증권을 제출 받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표2. 공사원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계약 현황]

| 구분 | 계약기간 | | | 계약 상대방 | 계약금액 | 선금 지급액 | 보증보험 기간 |
|----|------------------------|-----------------------|----------------------------------|-------------------------------------------------------------------------------------------|--------|-----------|------------------------|
|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 |
| 내용 | ‘20.2.6.~ ‘20.6.4.. | ‘20.2.6.~ ‘20.8.3. | 용역중지 60일 (‘20.5.29.~‘20.7.28) | 주식회사  | 200백만원 | 100백만원 | ‘20.2.24.~ ‘20.8.3. |

○ 관련자 의견

◀부는 우리공사 전반의 원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20~‘21년, 2년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 외 다양한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현재는 해당 용역의 성과로 우리공사 원가관리 시스템 마련 및 기준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미흡함은 있으나 해당 용역의 평가위원회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선금보험증권은 용역중지 후 재개로 인해 당초 보증보험 기간이 준공일 내 들어오는 바, 임의적으로 판단한 업무 소홀이 있었지만 본 용역을 문제없이 마무리 하였기에 선처를 바라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 계약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규정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 요구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및 용역계약 선금지급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 집행기준」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처(◀부). 끝.

감사결과처분요구서

| | | | | | |
|-------------|------|--------|----------------|--------|--------|
| No. 2022-14 | | | | | |
| 소관부서 | 시행년도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조치방법 | 금액(천원) | 신분상 조치 |
| ◎센터 | 2022 | 권고 | - | - | - |

제 목 : 계약업무처리 소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 확인)

○ 현황(개요)

공사 ◎센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센터 홈페이지 및 내부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하 “본 용역”이라 한다)을 용역발주하였으며, 2020.7.8. 용역입찰공고 후 2020.7.13. 1개사 입찰참여로 유찰되었으며 2020.7.16. 용역입찰재공고 후 2020.7.23. 1개사 입찰참여로 유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입찰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2020.7.2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 후 [표 1]과 같이 2020.7.30. 수의계약 체결하여 2020.8.6.부터 2020.10.6.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센터 홈페이지 및 내부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계약 현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사업명 | ◎센터 홈페이지 및 내부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 계약금액 | 38,700,000원(VAT포함) | 기초금액 40,700,000원(VAT포함) |
| 계약상대자 | (주)★★★ | |
| 계약기간 | 2020.08.06. ~ 2020.10.06.(62일) | |
| 사업내용 | · 도내 공공건설 지원센터의 미래 정보화 전략 수립 · 공공건설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 |

○ 관련법령(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 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된 문제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을 보면 본 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해당되어,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공고 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지만, 본 용역 입찰공고 및 입찰재공고 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표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대분류 | | 제품 | | 세부분류 | | 산업 분류 번호 | 특이사항 |
|----------|----------------------|--------|-----------------|------------|--------------------------|-------------------------------------|---------------------------------------------------------|
| 분류 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제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
| 81 | 공학연구및 기술기반서 비스 | 811115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 웨어개발및도 입서비스 | 58221, 58222, 62010, 6202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에 한함 |
| | | |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 발서비스 | | |

또한 본 용역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여부에 대하여 확인 절차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 조치할 사항

1. 행정상 조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 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 절차 개선 “권고” 요구

- 해당부서는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계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센터, ♥처(♥부). 끝.